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2월 13일, 충청북도지사
나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3일
다. 상정일자 : 제195회 정례회 제9차 관광건설위원회(2001.12.18)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주 준 길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체육회관 건립으로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충북체육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의사업 추진에 있어
- 수의사업을 위한 전대가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
- 체육회관 위치를 현주소로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체육회관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
 - “청주시 방서동 38-1번지”를
⇒ “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-7, 57-4번지”로 함

- 수탁 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
 - “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”를
⇒ “전대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”로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-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바
- 수탁운영중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대가 불가능 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도 체육회관 시설에 대하여 전대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회관 주소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불임서류 :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
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청주시 방서동 38-1번지”를 “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-7, 57-4번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전대 및 그 권리”를 “전대할 수 있으나 그 권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</p> <p>제2조(위치) 회관은 충청북도 <u>청주시</u> <u>방서동</u> <u>38-1번지</u>에 둔다.</p> <p>제4조(운영위탁) ①회관운영은 충청북도 체육회장(이하 "체육회장"이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한다.</p> <p>②체육회장은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 <u>전대</u>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.</p>	<p>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<u>청주시</u> <u>상당구</u> <u>방서동</u> <u>38-7, 57-4번지</u>-----.</p> <p>제4조(운영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전대</u> <u>할 수 있으나 그 권리</u>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82조 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1.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2.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
3. 국가·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

② (생략)

제109조 (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84조의2 (행정재산등의 사용·수익허가 및 전대)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·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.